

금강대학교 신규(융합) 교과목 개발 및 지원 규정

제 정 : 2016. 12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규교과목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좌선정절차) ① 교원은 신규(융합)교과목개설계획서(별표1)를 수업관리부서에 제출한다.
② 교원이 신청한 신규(융합)교과목개설계획서(별표1)를 신규교과목개발지원 심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고 한다)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.
③ 위원회는 평가항목 및 배점(별표2)에 있어서 개발의 타당성, 내용의 적절성,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.

제3조(교강사 자격 및 의무) ① 신규교과목 개발은 금강대학교 전임교원이 참여한 경우에 한하되 정책적으로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과목은 비전임교원도 개발할 수 있다.
② 신규교과목 강좌의 운영 교강사는 금강대학교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으로 한다.
③ 융합교과목은 교강사가 협업하여 적절한 강의비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신규·융합교과목개발지원금) 신규(융합)교과목 개발 시, 과목의 특성 및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신규(융합)교과목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학칙의 준용) 이 운영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1)

[신규(융합)교과목 개설계획서]

교과목 Course Name		개설영역	
개설학년		이수구분	
담당교수 Name		e-mail/ Phone	
교과목 개요 (Course Overview)			
강의목표 (Course Objective)			
개발교재 (Course Materials)			
<p>주차별 강의 목차</p>			

※ 세부계획서 15P이상 기술 요망

신규개발 교과목 개요

1. 교육목적 및 필요성

◎ 작성요령 : 교과목의 교육목적 및 필요성 기술

-
-
-

2. 개발 교과목의 특징

◎ 작성요령 : 교과목의 특징 및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

-
-
-

3. 기대효과

◎ 작성요령 : 교과목으로 개발/운영하였을 때, 예상되는 학습효과 및 기대효과를 기술

-
-
-

(별표 2)

심사기준	세부내용	평가배점
개발의 타당성 (30점)	◦ 2025금강아젠다 금강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과 부합하는가?	10
	◦ 수강대상 인원이 많은 교과목인가? (0~20명 : 5점, 21 ~ 50명 : 8점, 50명 이상 : 10점)	10
	◦ 활용도(개설횟수 등)가 높은 교과목인가?	10
내용의 적절성 (60점)	◦ 학습주제 및 내용 선정이 적절한가?	20
	◦ 학습목적 및 내용이 구체적인가?	20
	◦ 해당 학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목인가?	20
윤리성 (10점)	◦ 교과목 내용이 지역, 이념, 성, 계층, 표절 등 윤리적 편견 및 적정성에 관한 문제가 없는가?	10
합 계		100